

「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」 운영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8-34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4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시민참여를 적극 독려하고, 지역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 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교류 및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, 우수사례 교환
-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고, 정보·정책 교류 및 우수 사례를 교환

□ 주요내용

- 「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」 운영 규약 주요 내용
 - 목적 :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권리와 복리를 증진
 - 기능
 - 지방정부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·정책교류 및 우수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
 -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, 교육에 관한 사항
 -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고, 정보·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 - 임원
 - 위원총회에서 회장 1명, 부회장(권역별) 선출
 - 임원의 임기는 1년, 1회에 한해 연임 가능
 - 회의 및 의결
 -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
 -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

찬성으로 의결

- 의안 제출
 -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
 -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
- 사무국
 -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둠
 -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함
- 자문위원
 -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.
 -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, 의결권은 없음.
 - 자문위원 및 명예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
- 사무국
 -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 1인과 간사를 둠
 -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과 담당주사로 함
- 재원
 -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

운영규약 : 붙임 1

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 2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사항 없음

방침결재문 : 붙임 4

<붙임 1>

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(안)

(제정) 2019. 08. 23

제1조(명칭) 본 회는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고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약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방정부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·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
2.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, 연구, 교육에 관한 사항
3.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고, 정보·정책 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구성)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“별표”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.

제5조(임원)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.

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1.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.
2.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.
-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缺位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.

제6조(임원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

있다.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인 지방정부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정부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협의회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8조(회장단 회의)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제9조(의안의 제출)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건의 배부)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지방정부에서 주관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

제14조(자문위원 및 명예회원)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 단, 명예회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는다.

③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5조(사무국)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과 간사를 둈다.

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과 담당주사로 한다.

③ 필요시 사무국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관은 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16조(경비부담)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.

제17조(수당 등)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회계보고 및 결산)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하고,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9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0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규정)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.

[별표]

『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』 구성 지방정부단체(제4조 관련)

지 역	지 방 정 부 명
서울 (1)	성동구
인천 (1)	동구
광주 (1)	남구
부산 (1)	금정구
경기 (7)	안산시, 화성시, 남양주시, 안양시, 이천시, 오산시, 과천시, 양평군, 여주시
경남 (1)	거제시
충남 (1)	논산시

※ 상기 지방정부는 창립총회 시 참석 단체임.